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동 울 의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!

김동울 의원입니다.

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,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,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,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